

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안(전문)

건설교통부	훈령 제618호	2006. 6. 20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45호	2009. 8. 26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2013. 3. 0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천법 제16조 규정의 유역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수자원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유역조사의 유형(이하 “조사유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항목을 말한다.

②유역조사의 주기(이하 “조사주기”라 한다)라 함은 조사항목의 생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조사유형별 조사항목의 갱신 시기를 말한다.

③유역조사의 방법(이하 “조사방법”라 한다)이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방법을 말한다.

④유역조사의 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주기에 따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⑤유역조사의 성과(이하 “조사성과”라 한다)라 함은 조사자료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다음의 각호에 관한 사항들에 적용한다.

1. 조사유형,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 유역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역조사 자료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 2 장 유역조사의 시행

제1절 조 사 유 형

제4조(기본현황조사) 기본현황조사는 유역특성, 인문·산업·경제, 자원, 기후·기상, 수문특성, 지하수특성 등 유역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유역특성조사는 유역구분에 의한 수치표고, 유역특성인자, 하천망, 하천특성, 지형특성, 토양특성, 지질특성, 토지피복특성, 임상특성, 하도특성, 하상특성을 조사한다.
2. 인문·산업·경제조사는 행정구역, 인구, 역사문화, 경제, 시설물, 관련계획 등을 조사한다.
3. 자원조사는 토지자원, 산림자원, 광물자원, 골재자원 등을 조사한다.
4. 기후 및 기상조사는 기상자료 및 기상현황을 조사한다.
5. 수문특성조사는 기존 유출성과와 일유출, 홍수유출, 수면증발량 등을 조사한다.
6. 지하수조사는 용도별 이용현황, 수리, 수질특성 등을 조사한다.
7. 항공촬영은 유역의 주요하천에 대하여 항공촬영을 실시한다.

제5조(이수조사) 이수조사는 용수의 사용실태 및 용수수요 추정을 위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수이용현황, 이수시설현황, 수리권, 하천유지유량, 가뭄, 물이동 특성, 회귀수량 표본조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용수이용현황 조사는 생활용수산정을 위하여 상수도 이용량, 미급수 이용량, 기타 이용량 등을, 공업용수산정을 위하여 계획입지공단이용량, 자유입지업체이용량, 화력발전냉각용수, 공업용수 실이용량 등을, 농업용수산정을 위하여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이용량 등을 조사한다.

2. 이수시설 현황조사는 댐(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댐 등), 상수도시설(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급수구역, 농업용시설(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용수공급실적 등을 조사한다.

3. 수리권조사는 허가수리권, 관행수리권, 수리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4. 가뭄피해현황 조사는 기존 피해 기록 등을 조사한다.

5. 물이동특성 조사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 이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의 유역간 물이동 특성을 조사한다.

6. 회귀수량 현장표본조사는 생활용수 회귀율, 공업용수 회귀율, 농업용수 회귀율에 대하여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7. 하천유지유량조사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을 조사한다.

8. 수력현황은 전력공급, 수력발전현황을 조사한다.

제6조(치수조사) 치수조사는 유역내 치수와 관련된 사업, 시설현황, 홍수피해 등을 조사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치수사업현황은 치수사업연혁, 치수사업실적, 하천개수율, 고시홍수량 등을 조사한다.

2. 치수시설 현황조사는 제방, 내수배제시설, 수문, 통문, 통관 등의

치수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3. 홍수피해 및 위험조사는 홍수피해현황, 침수실적현황, 홍수흔적조사 등 홍수피해조사와 수해상습지, 홍수범람위험구역, 재해위험지역 등 홍수위험지역을 조사한다.

제7조(환경생태조사) 환경생태조사는 환경을 고려한 유역의 개발·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매립장, 마을하수도 등의 현황과 각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수질측정망 조사 및 오염부하량을 조사한다.

가. 수질측정망 조사는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수, 지하수, 도시관류, 공단배수 등의 측정망 현황 및 수질을 조사한다.

나. 오염부하량 조사는 인구, 축산, 산업, 토지, 양식장의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을 조사한다.

3. 생태환경조사는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식생, 습지, 부착생물, 저서성 무척추동물, 갑각류 등 생물과 천연, 멸종, 보호종 등 유역내 생태환경 현황 조사와 저니질, 경관 등에 대한 현장 표본 조사를 한다.

4. 토양오염조사는 전국망과 지역망의 토양측정망을 활용하여 오염현황을 조사한다.

5. 하천환경정비 현황조사는 하천정비현황과 하천공간활용 현황을 조사한다.

제2절 조 사 주 기

제8조(조사주기의 구분) ①조사주기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수자원정책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1년, 5년, 10년 주기와 수시 및 특별조사로 구분한다.

1. 1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상시 활용성과 변동성이 높은 자료 또는 연간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2. 5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유역의 중·장기 변동 특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3. 10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유역특성 등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4. 수시 조사항목은 시설제원 현황 등과 같이 변동성은 적으나 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갱신이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5. 특별 조사항목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항목 중에서 조사성과의 활용성과 조사성과에 대한 사용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조사주기는 수자원의 여건 변화와 조사성과의 활용성, 정보화, 사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조사항목별 주기) 조사항목별 조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절 조사방법 및 조사주체

제10조(조사방법의 구분) ①조사방법은 최고품질의 조사성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기술을 도입하여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활용, 문헌조사,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1.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활용은 수치지형도, 기본지리정보, 위성영상자료 등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2. 문헌조사는 통계자료, 보고서, 행정문서, 웹문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3. 현장조사는 직접 측정에 의한 조사로 측정기구의 검증, 측정, 자료수집,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의 절차에 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②각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그 속성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항목별 방법) 조사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조사의 시행주체) ①유역조사의 시행주체는 하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유역조사 업무 일부를 수자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유역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유역조사 자료 및 성과의 관리

제1절 조사성과의 정보화

제13조(조사성과의 정보화) ①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조사성과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및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하천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성과 제공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 등급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자료의 검증 및 보고서 발간

제14조(조사자료의 검증)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조사성과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자료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사성과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성과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성과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하천정보센터장

2. 성과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역조사의 부문별 전문가와 조사성과의 사용자

③성과검증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급에 따른 자료제공 여부, 조사자료의 최종 검증 등 조사성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조사성과 보고서의 발간)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성과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매년 조사성과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유역조사 교육·훈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조사 업무 및 조사성과의 정보화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역조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수자원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의견수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조사 성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성과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세칙)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